4. 지원자격

전형	구분	전형유형	모집단위	지원자격
정 원 내		일반 전형	전체학과	·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	변 전	일반고	치위생과(주/야)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반려동물과	 일반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구 종합고등학교 인문과(일반과정, 인문 사회과정, 자연과정, 보통 과정) 졸업(예정)자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 졸업(예정)자 자율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검정고시(고졸학력)합격자 ※ 일반고 중 직업과정이수(예정)자 및 대안학교 졸업(예정)자 지원 가능
		특성화고	치위생과(주/야)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반려동물과	• 특성화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구 종합고등학교 실업계(전문과정) 졸업(예정)자 •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고, 체육고, 마이스터고 졸업(예정)자 •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중 전문계열 교육과정 이수자
		협약을 통한 연계교육	간호학과 식품영양과 호텔외식조리과 제과제빵과 세무회계과 패션디자인과 보건행정과 방송콘텐츠과 실용음악과	・본 대학과 연계교육 협약이 체결된 특성화(전문)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고교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 (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) ※ 연계교육과정 고교명 : 안양문화고등학교, 삼일고등학교,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, 매향여자정 보고등학교,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
		고른기회	호텔외식조리과 미용예술과 (피부미용전공/ 헤어미용전공/ 메이크업미용전공) 제과제빵과	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국가보훈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써 보훈(지)청장이 발급하는 「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증명서」제출가능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※ 농어촌학생,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: 정원외 지원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함
		경력자 -	치위생과(야)	· 치과병원, 치과의원 재직경력 2년 이상인 자
		94A	반려동물과	·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		성인학습자	펫케어과 의료재활과 사회복지상담과 라이프케어과 보육과	· 만21세이상 출생자(수시1차 : 2003.10.03.이전 / 수시2차 : 2003.11.23. 이전) 중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정 원 외	기회 균형 선발	농어촌 학생	전체학과	I.유형 : 중학교(3년)+고교(3년) (지원자+부모) -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 포함)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시에 동 기간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□.유형 : 초등(6년)+중학교(3년)+고교(3년) (지원자본인) -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 포함)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시에 동 기간에 본인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□.유형 : 조등(6년)+중학교(3년)+고교(3년) (지원자본인) -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 포함)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시에 동 기간에 본인이 농어촌 및 포함)가 최종 고교졸업일까지 해당지역에 재학(이수) 및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합격(입학)이 취소됨
		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	전체학과	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 한가지 이 상에 해당되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※ 수급 가구의 학생 → 주민등록표등본 內 같은 세대 구성원 ※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 해당 가구 :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, 차상위 장애 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차상위 자활 급여, 한부모 가정 지원
	전문대학 이상졸업자		전체학과	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수료한 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수료한 자 학점은행제 80학점 이상 취득자(학사학위과정에 한함) ※ 외국대학 출신자는 지원불가